

제29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2022. 9. 20.(화) 10:00】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운영위원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2년 9월 20일
전문위원 권 오 숙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2022 - 74
- 나. 발 의 자: 최세진 의원 외 5명
- 다. 발의일자: 2022년 8월 26일
- 라. 회부일자: 2022년 9월 5일

2. 제안이유

전부개정 된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관계 조문을 정비하고, 견직사실 공개 의무화 규정 신설 등 의원의 견직신고 실효성 확보 및 의정활동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문장 성분과 어순의 정비
(안 제1조, 안 제2조)
- 나. 인용조문 정비, 의원의 견직신고 내용 공개 및 점검 규정 신설
(안 제5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43조, 제46조

5. 검토의견

가. 개정취지

- 전부개정 된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의원의 겸직신고 공개 의무화 규정과 점검 규정의 신설로 겸직신고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의정활동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함.

나. 주요 개정내용

- 안 제1조 목적 조항에 약칭을 없애고 상위법을 적용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을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으로 개정함.
- 안 제2조(윤리강령) 조항의 내용을 의원의 의무와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항목으로 항을 구분하여 규정.
- 안 제5조(겸직신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겸직신고 내용의 공개 의무화 규정과 겸직 신고에 대한 안내와 점검 규정을 신설.
 - 제4항: 의장은 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5항: 의장은 연 1회 이상 의원에게 겸직신고에 대하여 안내하고, 그 내용을 점검하여야 한다.
- 별지서식: 별지 제1호 서식의 인용 조문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으로 현행화하고 신고내용 공개항목 별지 제2호 서식 신설.

다.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 변경 및 의원의 겸직신고 공개 의무화 규정과 점검 규정의 신설로 겸직신고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
- 의원의 겸직신고에 관한 사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의원에게 연 1회 겸직신고에 대해 안내하고 점검하게 하여 겸직신고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 조례에 위임된 겸직내용 공개 방법 중 공개 항목을 서식(별지 제2호 서식)으로 신설 규정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였다고 사료됨.

□ 지방자치법

제43조(겸직 등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원
2. 헌법재판소 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6.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영업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7.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8.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②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③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해당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⑤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단체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3.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
4. 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⑥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제5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⑦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의 행위 또는 양수인이나 관리인의 지위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제한되는지와 관련하여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